

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9
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2014. 9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가. 현행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다수의 수탁운영 신청자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있으며, 전시판매장의 주소 및 전시판매 품목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,
- 나. 다수의 수탁운영 신청자가 있을 경우 대상자 선정을 명확히 하고, 전시판매장의 주소 및 전시판매 품목의 일부 수정을 통한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 및 조문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게 수정(안 제명)
-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⇒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
- 나. 판매장 주소 수정(안 제2조)
- 대관령면 횡계리 335번지 ⇒ 대관령면 대관령로 81
- 다. 전시판매품목 수정(안 제5조제1항)

- 농촌특산단지 제품과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·축·임산물 ⇒ 농·축·수·임산물
- 라. 수탁운영 대상자 선정(안 제6조제2항,제3항)
 - 수탁운영 계약기간 만료30일까지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
⇒ 군수의 위탁운영계획 공고기간 중 수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
 -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다수의 수탁운영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⇒ 문구 삭제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“붙임”
- 다. 관계부서승인 : 해당 없음
- 라. 입법예고(2014. 6. 12. ~ 2014. 7. 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”를 “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농촌특산지 및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·축·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등”을 “평창군내에서 생산되는 농·축·수·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 등”으로, “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위하여 평창군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(이하 “전시판매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(이하 “전시판매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횡계리 335번지”를 “대관령로 81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”를 “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평창군내에서 생산되는 농·축·수·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
2.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및 도내 시장·군수가 추천하는 농·축·수·임산물과 지역특산품

제5조제2항 중 “수입품목”을 “수입 품목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종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”을 “제3조에 따라 위탁 운영”으로, “각호의 1과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농업·축산농업협동조합”을 “농업·축산업협동조합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, “농·축·임산물”을 “농·축·수·임산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농업관련단체 등”을 “농업관련단체 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수탁운영 계약기간 만료30일까지군수에게 위탁신청”을 “군수의 위탁운영계획 공고기간 중 수탁운영 신청”으로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하며,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”을 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조정”으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”를 “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규정에 불구하고 농촌특산단지 및”을 “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”로, “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,000분의 10”을 “해당 재산평정가액의 1,000분의 10 이상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범위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수탁받은”을 “수탁 받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소홀히하여”를 “소홀히 하여”로 한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공익상”을 “공익에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인정할 대”를 “인정할 때”로, “수탁운영”을 “수탁 운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사항은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”를 “사항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</u> <u>및운영조례</u></p>	<p><u>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</u> <u>및 운영 조례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농촌특산</u> <u>지 및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·</u> <u>축·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</u> <u>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</u> <u>산 농민과 소비자간의 직거래를</u> <u>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평창군농</u> <u>촌특산품 전시판매장(이하“전</u> <u>시판매장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</u> <u>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</u> <u>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</u> <u>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평창군내에</u> <u>서 생산되는 농·축·수·임산</u> <u>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 등</u>---- ----- ---- <u>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</u> <u>성화시키기 위하여 평창군 농특</u> <u>산품 전시판매장(이하 “전시판</u> <u>매장”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위치) 전시판매장은 평창군 대관령면 <u>황계리 335번지</u>에 둔 다.</p>	<p>제2조(위치) ----- ----- <u>대관령로 81</u>----- --.</p>
<p>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전시판매장 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 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하 기 위하여 <u>평창군농촌특산품전</u> <u>시판매장운영위원회(이하 “운</u> <u>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4조(운영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 <u>평창군 농특산품 전</u> <u>시판매장 운영위원회</u>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전시판매품목) ① 전시판매</p>	<p>제5조(전시판매품목) ① -----</p>

장의 전시판매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촌특산단지 제품과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·축·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

2. 도내 시장·군수가 추천하는 지역특산품 및 농·수·축·임산물

3. 4. (생략)

② 다만, 외국산 수입품목은 전시판매할 수 없다.

제6조(운영의 위탁) ① 제3종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는 법인, 단체, 일반인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

1. 농업·축산농업협동조합·산림조합 등 생산자 단체

2. 기타 지역특산품 및 농·축·임산물 생산단체

3. 농업관련단체등 비영리 단체

4. (생략)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

----- 각 호 -----
-----.

1. 평창군내에서 생산되는 농·축·수·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

2.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및 도내 시장·군수가 추천하는 농·축·수·임산물과 지역특산품

3. 4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수입 품목 -----
-----.

제6조(운영의 위탁) ① 제3조에 따라 위탁 운영-----

각 호의 어느 하나와 -.

1. 농업·축산업협동조합·산림조합-----

2. 그 밖의 ----- 농·축·수·임산물 ---

3. 농업관련단체 등 -----

4.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라-----

-----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

수탁운영 계약기간 만료30일까지
지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
하며,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
탁자를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
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
며,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
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다만,
다수의 수탁운영 신청자가 있을
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조정
할 수 있다.

④ 수탁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
제92조 및 평창군공유재산관리
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
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용료
의 요율은 평창군공유재산관리
조례 제23조의규정에 불구하고
농촌특산단지 및 농촌경제의 활
성화를 위하여 당해 재산평정
가격의 1,000분의 10으로 하며
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
다.

제7조(관리·운영비) 전시판매장
사용에 따른 공공요금·수선유
지비 등의 관리비 및 위탁운영
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

군수의 위탁운영계획 공고기간
중 수탁운영 신청-----

-----.

③ ----- 하며
운영위원회에서 조정-----
----- . <단서
삭제>

④ -----
-----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
조례-----
----- . -----
----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
례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

----- 해당 재산평정가액의
1,000분의 10 이상-----
----- .

제7조(관리·운영비) -----

----- 및 위탁운영-----

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수탁자 준수사항) 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③·④ (생략)

제9조(위탁의 취소)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3. 공용, 공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

제10조(감독)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

----- 범위-----

-----.

제8조(수탁자 준수사항) ① -----
---- 수탁 받은-----

-----.

② ----- 소홀히
하여 -----

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위탁의 취소) -----
각 호의 어느 하나-----

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공익에 -

제10조(감독) ① -----
- 인정할 때-----

및 수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, 서류, 기타의 물건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제11조(준용)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.

-- 수탁 운영-----

-----.

② ----- 제1항에 따라-----

-----.

제11조(준용) -----

----- 사항은 평창군공유재산 관리조례-----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 (제3조제5항 중 제1호)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비용추계사항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이 상 필
연락처	(033) 330 - 1302

관계법령 발췌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

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
2.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
3.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
4.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
5.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43조의2(일반재산의 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·처분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·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(이하 이 절에서 "수탁기관"이라 한다)는 위탁재산을 관리·처분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③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.

1.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

2.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공용·공공용으로 필요할 때

2. 수탁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

⑤ 수탁기관의 범위, 위탁기간,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